

『구미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5년 6월 29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7월 1일

라. 상정일자 : 2015년 7월 8일

제197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경제통상국장 황 종 철

나. 제안이유

- 「과학기술기본법」, 「소재·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
조치법 시행령」 등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
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 및 부품·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 방침을
세우고
- 「지방재정법」의 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에 따른 관련 규정을
정비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○ 조례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 : 안 제1조, 제4조

- 목적 : 구미시 지역경제의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.
- 책무 :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과학진흥시책의 적극적 추진

○ 과학기술진흥사업 : 안 제5조 ~ 제8조

- 과학기술진흥사업 , 과학기술인력 육성사업, 과학기술문화 확산사업, 과학기술혁신 역량강화 등 사업비 지원 근거 마련

라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4조, 「산업발전법」 제5조
-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 8항 등
- 「소재·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제2조
- 「수도법」 제3조20호
-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2조, 제5조, 제11조, 제15조, 제19조, 제27조
- 「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」 제2조, 제3조
- 「국가균형발전특별법」 제4조
- 「민·군 기술협력사업 촉진법」 제3조

※ 참고자료 : 「경상북도 과학기술진흥 조례」

○ “부칙” 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6호·제7호, 제19조, 제20조 및 제25조를 각각 삭제한다.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최 명 호

○ 본 「구미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안」은,

- 구미시 과학기술진흥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학기술 중심의 시정을 구현하고, 인재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, 「지방재정법」의 개정에 따라 보조금지급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